

귀가증

제 호		
귀가자	성명	생년월일
	입영일	치유기간
	귀가병명	

위 본인은 입영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, 본인이 호소하는 질환(의증)에 대한 충분한 검사 및 치료 후 재입영 혹은 재신체검사를 받기로 함을 안내받았습니다.

년 월 일
귀가자 성 명 (서명)

「병역법 시행령」 제18조의8제4항에 따라 귀가하는 사람임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부 대 장

직인

유의사항

- 입영 후 신체검사 결과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귀가된 사람 중
 - 징집병으로 입영한 사람은 치유기간이 지난 후 지방병무청장의 입영통지에 따라 다시 입영해야 합니다.
 - 모집병으로 입영한 사람은
 - 질병이 치유되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역병 선발 시 부여된 군사특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다시 입영할 수 있습니다.
 -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지 않거나 현역병 선발 시 부여된 군사특기를 필요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합니다.
- 입영신체검사결과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재입영 후 다시 귀가된 사람은 치유기간이 지난 후 또는 병적기록표 등을 받은 후 지방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.